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권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AQ042]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권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집합투자기구 특징	<p>1. 투자대상자산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p> <p>2. 투자전략 :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 이상 60% 이하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권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상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p>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주)((전화) ☎ 1577-1640)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모집(판매) 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16년 05월 12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Class)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종류(Class)	보수(연, %)			
	판매회사 보수	운용 등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종류C	0.700	0.56	0.01	1.27
종류C-e	0.210	0.56	0.01	0.78

※ 주식 사항

- \* 위에 기재된 종류(클래스)는 대표적인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각 보수의 지급 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17시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1.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식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 - 기본운용전략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 이상 60% 이하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상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50% + MSCI AC World Index 50%

<KOSPI: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등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p>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p> <p>② 이 중 “소비자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80%이상으로 합니다. “소비자 관련주”란 소비자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며,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소비자관련주였으나 이후 소비자관련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된 주식도 소비자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p> <p>※ 비교지수: KOSPI</p>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p>①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 마켓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로 과급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컨슈머 테마인 “그레이트 컨슈머” 관련 주식에 투자합니다.</p> <p>② 종목선정 및 종목별 투자비중은 value, 수익성, 모멘텀, Quality, 유동성, 변동성 등의 변수를 정량적분석 방법을 통하여 점수화하여 종목별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multivariate scoring 전략을 활용합니다.</p> <p>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p> <p>※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p>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4.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16.04.30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 된 집합투자기구	
			운용중인집합 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송진용	1975	본부장	52개	27,967억원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 자부문	-개	-억원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Ryan Coyle	과거경력 : Senior Research Analyst (Consumer), Caerus Global Investors Senior Associate Analyst (Consumer, Retail, Services), Stadia Capital Financial Analyst, Bank of America Securities

## 5. 투자실적 추이

연도 (기간)	최근 1년차 '14.11.01~'15.10.31	최근 2년차 '14.03.17~'14.10.31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C	9.93	8.73	-	-	-
투자신탁	11.32	10.05	-	-	-
비교지수	6.12	-2.02	-	-	-

상기사항은 대표종류 수익률만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종류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주식, 채권 등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및 투자대상 자산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해 소수 종목, 특정 지역(국가) 및 특정산업(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주요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로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두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두자신탁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두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b>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퀀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b>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b>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퀀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b> -이 투자신탁은 특정통화에 집중되어 투자 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해당 특정통화)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주1) 각 모두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 (1) 과세

※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환 절차 및 방법

구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전환	- 이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하고 -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8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매입(전환)	- 이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하고 -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전환청구일(D)로부터 제9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매입(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청구 시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전환은 불가하므로,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전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3.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합니다.

(2) 전환청구의 취소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당일 15시까지로 한합니다. 다만, 15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합니다.

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합니다. 다만, 17시 경과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로 한합니다.

(3) 위의 (1)항 1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위의 (1)항 2호 및 3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4) 수익자가 전환청구한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수익자는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